

10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적용시기: 2024년 1월 이용현황 기준 2월 지급 시부터 적용

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반(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

다. 지원금액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

(단위: 원)

반구분	0세(0~1세반)	1세(1~2세반)	2세(2~3세반)
지원금액	629,000	342,000	232,000

라. 지원금 산정방식

- (기본 전제) 인센티브는 정원을 미충족한 ‘공석’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이 아닌 자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지원
 - ※ 월중 입·퇴소에 따른 이동이 있더라도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생성됨에 유의
 - ※ 해당 반에 지급된 기관보육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반별 기관보육료 최대 지원금액(정원 충족 시 기관보육료 × 정원)을 넘을 수 없음
- (퇴소 아동) 재원 중인 아동이 월중 퇴소하여 말일 기준으로는 공석인 경우, 해당 월의 인센티브는 퇴소아동 대상으로 지급된 ‘일할계산’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어 기관보육료가 일할 생성되므로(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기관보육료** 미지원), 퇴소로 인한 공석 자리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일할 생성된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으로 지원함
- (퇴소아동 없이 공석) 기존 재원 아동이 **있는 경우**, 공석 대상 인센티브 전액 지원



보육 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 (출석 인정 특례) 부모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기준(IX. 보육예산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준용
- 인센티브 생성 시점에 정원을 충족한 반 또는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미만인 반에는 인센티브가 미지원되며, 기준과 같이 기관보육료만 지원함
- (지원 예시) 2024년 1월 보육일수 26일 기준

- ①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단위: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재원	629,000	0
공석	공석	0	629,000

- ②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단위: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 1. 17. 입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0
공석	공석	0	629,000

* B의 경우,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공석이 아니므로 인센티브 미지원

- ③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1명
(단위: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 1. 17. 입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0
C	'24. 1. 29. 퇴소	$629,000 \times 24/26 = 580,610$	48,390

* 인센티브 생성 시점에 0세반 현원 2명이나, C가 1월29일까지 재원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 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 ④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단위: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 1. 16. 퇴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314,500
C	'24. 1. 22. 입소	$629,000 \times 9/26 = 217,730$	0
D	'24. 1. 17. 퇴소	$629,000 \times 14/26 = 338,690$	0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0세반 현원 2명이나, B와 D가 월중 퇴소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 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 중 적게 받은 B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 ⑤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단위: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 1. 16. 퇴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120,970
C	'24. 1. 22. 입소	$629,000 \times 9/26 = 217,730$	0
D	'24. 1. 30. 퇴소	$629,000 \times 25/26 = 604,800$	0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0세반 현원 2명이나, B와 D가 월중 퇴소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 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 중 적게 받은 B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인 314,500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0세반 기관보육료 지원 최대 금액(629,000원×3명=1,887,000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대 금액과의 차액인 120,970원 지원

- ⑥ (1-2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3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단위: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1세)	재원	342,000	0
B(1세)	재원	342,000	0
C(1세)	재원	342,000	0
D(1세)	'24. 1. 16. 퇴소	$342,000 \times 13/26 = 171,000$	0
E(2세)	'24. 1. 16. 퇴소	$232,000 \times 13/26 = 116,000$	226,000
F(2세)	'24. 1. 22. 입소	$232,000 \times 9/26 = 80,300$	0

* 연령혼합반은 하위연령 기관보육료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1-2세 혼합반 현원 4명이나, D와 E가 월중 퇴소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 중 적게받은 E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 ⑦ (2-3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4명, 퇴소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단위: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4. 1. 16. 퇴소	0	232,000
F(2세)	'24. 1. 16. 퇴소	$232,000 \times 13/26 = 116,000$	116,000
공석	공석	0	232,000



- * 연령혼합반은 하위연령 기관보육료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2-3세 혼합반 현원 4명이나, E와 F가 월중 퇴소함. 단, F는 2세로 기관보육료 일할계산분을 지원하나, E는 3세로 기관보육료 미지원하므로, E의 공석은 2세 기관보육료 단가로 인센티브 지급, F의 공석은 2세 기관보육료 단가인 인센티브와 일할계산한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어린이집 연령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1개반
 - 정원은 탄력편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현원은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1개소당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지원
 - 생성일 당시 유효한 반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생성

반구분	정원기준	지원반	지원인원
0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0~1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1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1-2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2세반	7명	현원 4명, 5명, 6명인 반 중 1개반	1~3명
2-3세반	7명	현원 4명, 5명, 6명인 반 중 1개반	1~3명

※ 월 중 상하위반 편성으로 인한 보육연령 변경 시 생성일(1일0시/말일 24시) 연령 및 반편성 기준으로 생성

바.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 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 지원요건 및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요건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인센티브가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이용현황을 확정
 - ※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 가능
 - ※ 지원금 생성 기준은 '라. 지원금 산정방식' 참조

3) 지원금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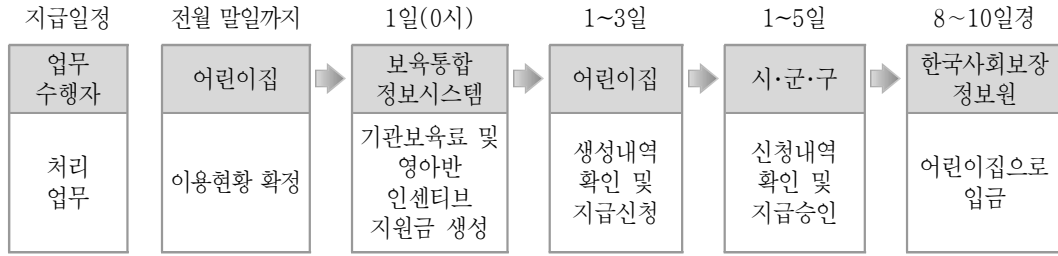
-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 신청기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어린이집 신청 기간 내에 기관보육료 지원요건 위반을 해소한 경우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를 재생성하여 신청하면 신청 당월 지급 가능(기 신청한 경우 재생성 불가)
- (지원금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신청 당월에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5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군·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가능
-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
 -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지원중단

- 기관보육료 지원중단 사유 준용

아. 환수

- 기관보육료의 환수 규정 준용
-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동의 반편성 변경 또는 동일 아동의 잦은 입·퇴소 시에는 추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